



문화체육관광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

1. 관련 근거

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1.1.2.)

나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41(2021.1.2.)
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(1.2)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대책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3. 소속기관과 관련 협회 및 단체에서는 소속 도서관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,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다만, 금번에 새롭게 조정되어 시행되는 방역 조치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이 불가하며, 강화된 조치만을 시행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○ 적용 기간: 2021.1.4.(0시) ~ 2021.1.17.(24시)

○ 대상 지역: 수도권 외 지역(14개 시도)

1) 모임·행사

○ 법적 근거: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각 호

○ 조치 내용: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, 그 외 모임·행사 100인 이상 금지

-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

-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(예: 교실)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

* 전시회·박람회·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, 100인 기준 미적용

붙임 6. 수도권 외 지역 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2) 국공립시설

○ 소관 부처·지자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 관리하며 운영

- 경륜·경정·경마장·카지노 운영 중단, 이외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%로 제한 원칙

* 부처·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, 방역 관리상황,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

3) 직장근무

